

#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 : 사후관리 및 우대혜택을 중심으로

2022. 6.

정훈·이미현·권순오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정 훈 세정연구팀장

### 공동연구원

이미현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4급

권순오 세정연구팀 특수전문직4급



# 목 차

I. 서론 .....	1
II.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	3
1. 모범납세자 제도 개관 .....	3
가. 모범납세자 제도 연혁 .....	3
나.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	4
2.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	14
가.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	14
나.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 .....	17
3. 모범납세자 제도의 쟁점 .....	18
가. 포상 기능 .....	18
나.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의 도덕적 해이 .....	24
다. 모범납세자 혜택의 실질성 .....	26
III. 다른 기관 및 주요국의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	28
1. 우리나라 다른 기관의 모범납세자 제도 .....	28
가. 관세청 .....	28
나. 보건복지부 .....	30
다. 지방자치단체 .....	31
라. 국세청과 우리나라 다른 기관의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비교 .....	39
2. 주요국의 운영 사례 .....	43
가. OECD 회원국의 운영 사례 .....	44
나. OECD 회원국 이외 .....	50

IV. 개선 방안 .....	56
1. 개선 방안 .....	56
가. 명칭 변경 .....	56
나. 제도 홍보 강화 .....	58
다. 혜택 개선 .....	61
2. 제안의 구분 .....	64
V. 결론 .....	65
참고문헌 .....	67

## 표 목차

〈표 II-1〉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 .....	5
〈표 II-2〉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 .....	10
〈표 II-3〉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부서 .....	16
〈표 II-4〉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요건 .....	17
〈표 II-5〉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2015~2020년) .....	24
〈표 II-6〉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현황(2015~2021년) .....	25
〈표 III-1〉 관세청 모범납세자 제도 .....	29
〈표 III-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	31
〈표 III-3〉 서울시 모범납세자 제도 .....	34
〈표 III-4〉 부산시 모범납세자 제도 .....	36
〈표 III-5〉 광주시 모범납세자 제도 .....	38
〈표 III-6〉 국세청과 우리나라 다른 기관의 모범납세자 제도 등 운영 현황 비교 .....	40
〈표 III-7〉 우량신고법인 심사사항(2000년 기준) .....	45
〈표 III-8〉 인도네시아 모범납세자 제도 .....	52
〈표 IV-1〉 국내 다른 기관 및 해외 모범납세자 명칭 비교 .....	57
〈표 IV-2〉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소득탈루 현황(2015~2019년) .....	59
〈표 IV-3〉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관련 정보 획득 방법의 응답항목별 분포 .....	62
〈표 IV-4〉 홈택스 기능의 불편함 정도 .....	63
〈표 IV-5〉 개선 방안의 구분 .....	64

## 그림 목차

[그림 II-1] 모범납세자 증명 .....	8
[그림 II-2]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 표기 .....	9
[그림 II-3] 모범납세자 공항 우대 혜택 이용 방법 .....	12
[그림 II-4] 모범납세자 주차장 무료 이용 스티커 .....	13
[그림 III-1] 실제 수여된 표경장 .....	47
[그림 III-2] 표경장 수여식 .....	48
[그림 IV-1]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60

# I. 서론

- 국세청은 1967년 3월부터 납세자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유인제도로써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을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철도 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과 같은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표창 등을 수상한 경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또한,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의 우대 혜택 부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사후관리 조항이 추가됨
  -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부적격한 사유 발생 여부를 검증하고 우대 혜택을 배제하는 등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 중임
  - 2019년부터 연 1회에서 연 2회로 검증 횟수가 증가하고, 2021년부터는 종전 8개였던 검증항목이 12개로 확대됨
  
-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들이 불성실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제도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대 혜택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적정 혜택의 발굴이 필요함

- 특히,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정상 우대 혜택을 지양하고, 심리적 보상에 초점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모범납세자 제도의 운영 실태 및 타 부처의 관련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모범납세자 제도의 사후관리 및 우대 혜택을 중심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이후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우대 혜택 발굴 등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해외 주요국의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도입 가능한 우수 혜택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주요국에서는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국내 타 부처의 유사 사례에 비증을 두어 검토함

## Ⅱ.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 1. 모범납세자 제도 개관

#### 가. 모범납세자 제도 연혁

-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이 1967년 3월 제1회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최초로 선정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 모범납세자의 훈격에 따라 6개월~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가 시작됨
- 이후 2003년 7월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성실신고납세품토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또는 성실도 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하여 그 훈격과 공적 및 납세 성실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세무행정집행 면에서 우대관리하기 시작함
  - 즉 모범납세자 제도가 제도로서 정초된 발단은 「국세청훈령」 제1504호,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임
- 현재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명칭이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
  - 동 훈령의 명칭은 2010년에 국세청 훈령 제1867호에 의해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에서 「성실납세자 관리규정」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국세청 훈령 제1886호를 통해 2011년부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으로 변경됨

- 모범납세자의 사후관리의 측면의 경우 2014년까지는 행하지 않았으나, 일부 모범 납세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2015년 7월부터 사후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음
- 2015년 7월 최초의 사후검증에서는 연 1회 모범납세자에 대한 성실도를 검증 하였으나, 2019년부터 연 2회(4월, 10월) 검증으로 검증 횟수를 확대함

### 나.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거나 별도 선정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다양한 세정상,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함
- 이러한 우대 혜택은 선정유형 및 포상, 표창의 등급에 따라 우대 혜택의 여부와 혜택별 기간 등이 상이함
  - 예컨대,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와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는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세정상 우대 혜택 중 일부만을 제공함(‘별도 선정 모범납세자’는 조사유예,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는 조사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혜택만을 제공)
- 해당 단락에서는 모범납세자의 우대 혜택에 대한 유형 분석 및 모범 납세자 유형 별, 훈격별 혜택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하고자 함

1) 세정상 우대 혜택

〈표 II-1〉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

우대 혜택	대상 훈격	우대 기간	비고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순환조사 대상 법인 제외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	
	산통부 또는 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선정일로부터 2년	
	고용노동부장관 추천	선정일로부터 1년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순환조사 대상법인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된 경우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	
납세담보 제공 면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납세담보 면제 한도 5억원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	
	산통부 또는 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고용노동부장관 추천	선정일로부터 2년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과거 10년간 표창 이력 동시 표기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	증명서 상단에 표기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	

자료: 국세청, 『202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2. 3.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 1~3년간 유예하고, 순환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대신 2~3년간 법인 조사에 대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러한 경우 훈격의 고하에 따라 혜택의 기한이 다름
    - 세무조사 유예는 순환조사 대상 법인 외의 법인에 수여된 표창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표창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의 혜택이 주어짐
    - 순환조사 대상 법인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제외된 경우 해당 법인에 수여된 표창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인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시기 선택의 혜택이 주어짐
  - 단, 세무조사 유예 혜택의 경우 모범납세자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정보자료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우대관리 기간 중 조사 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하는 때,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는 유예를 배제함
-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경우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이 가능함
- 해당 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를 수상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간단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세무상담 및 증명 발급 서비스와 같은 납세지원과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휴대폰 충전기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이 표기되는 혜택이 주어짐
- 납세담보 면제의 경우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5억원의 한도 내에서 면제함

- 납세담보 면제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 표창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혜택이 주어짐
- 모범납세자 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며 납부내역 증명 등과 같은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에도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이 표기되어 발급됨
- 이러한 경우 모범 납세자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혜택이 유지됨

[그림 II-1] 모범납세자 증명



( 1 / 1 )

모범납세자 증명		처 리 기 간		
발 급 번 호 6780-608-9500-047		즉 시		
납 세 자	상호(법인명)	다침완선 공어용영	사업자등록번호	101-**-*****
	성명(대표자)	한보승 외 1 명	주민등록번호	580219-*****
	주 소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수 상 내 역	수 상 일 자	분 야	훈 격	우 대 기 간 일
	2020.02.18	자체선정	대통령표창	2023.02.17
<p>※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우대대상, 우대기간 등)은 해당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em;">위 납세자는 상기와 같이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p>				
접 수 번 호	600000875164			
담 당 부 서	민원봉사실			
담 당 자	2022 년 2 월 7 일 <b>종로세무서장</b>  (인)			
연 락 처	000-0000-0000			




\* 본 증명의 위·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 민원증명(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또는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대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자료: 국세청, 『202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2. 3.

[그림 II-2] 일반 국세민원 증명 발급 시 모범납세자 표창 이력 표기



( 1 / 1 ) 아래 납세자는 2020년 02월 대통령표창을(문)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b>발급번호</b>		<b>납부내역증명</b>		<b>처리기간</b>	
1998-344-1589-159				즉 시	
<b>성명(대표자)</b>	한보송, 조미영	<b>주민(법인)등록번호</b>	110121-*****		
<b>상호(법인명)</b>	다킴완선 공여용영	<b>사업자등록번호</b>	101-**-*****		
<b>주소(본점)</b>	서울특별시 종로구 ***				
<b>사업장(지점)</b>					

(단위 : 원)

연도	세목	납부일	합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교육,방위세	가산금
2022	연지세	2022-02-10	10	10	0
				0	0

(증명발급대상 수납기간 : 2022.01 - 2022.02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표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b>계수번호</b>	600000875165
<b>담당부서</b>	민원봉사실
<b>담당자</b>	
<b>연락처</b>	000-0000-0000

2022년 2월 7일

**종로세무서장**








\* 본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 민원증명(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에서 발급번호로 확인, 또는 문서 해당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할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대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자료: 국세청, 『202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2. 3.

- 그뿐만 아니라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경우 각 세무서에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모범 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제주도의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 이러한 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표창 이하를 수상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됨

## 2) 사회적 우대 혜택

〈표 II-2〉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

우대 혜택	대상 훈격	우대기간	비고
철도 운임 할인	세무서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1년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한국무역보험공사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	
공항 출입국 우대	장관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법무부, 국정원 등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등 국제공항)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선정일로부터 2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1년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차장
콘도 요금 할인 (소속 임직원 포함)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소노인터네셔널 (구 대명리조트)
의료비 할인 (소속 임직원 포함)	국세청장 표창 이상 <sup>1)</sup>	선정일로부터 3년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한국 55개 병원
금융 우대	대출금리 등	은행별로 다름	신한은행 외 10곳
	보증심사 우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우대	국세청장 표창 이상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용 신용카드 발급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신한카드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로부터 3년	국방부
		선정일로부터 2년	방위청

주: 1) 지방청장 표창 이상(대구·경북), 세무서장 표창 이상(대전·충청, 부산·경남)  
 자료: 국세청, 『202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2. 3.

-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경우 철도 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과 같은 교통 관련 혜택이 부여됨
- 모범납세자는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혜택은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여받고 선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타인이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경우 부가운임 부과 또는 할인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인천, 김포, 제주, 김해 등 국제공항 이용 시 모범납세자는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가 법무부 적격심사에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관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국세 청장·지방청장 표창을 수상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법무부가 발행한 우대카드 대응 또는 부정사용 시에는 혜택이 배제됨

[그림 II-3] 모범납세자 공항 우대 혜택 이용 방법

### 전용 심사대 및 보안 검색대 이용 방법 안내

**01** 출국 시 전용 출입문 위치(인천공항)

제1 여객 터미널(3층)	제2 여객 터미널(3층)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 출입문(2·3·4·5번 출구 측면) 및 패스트트랙(1·6번)을 이용합니다.	교통약자 및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등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우대 출구 (1A·2A)를 이용합니다.

**02** 전용 출입문 이용 대상

- 모범납세자 본인과 동반 3인(가족 또는 동행 임직원 등)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방법

- 전용 출입문을 통과하면 전용 보안검색대가 나타납니다. 출입국 우대카드와 여권을 제시하고, 보안검색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합니다.

**04**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자동 심사대 이용 방법

- 전용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앞쪽의 출입국 우대 심사대에 여권과 출입국 우대 카드를 제시하고 심사받으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국민은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자동 출입국 심사 등록 센터 위치
  - [제1 여객터미널] 3층 체크인 H구역 앞
  - [제2 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05** 출입국 우대 카드 소지자는 전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 심사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202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2. 3.

-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경우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이러한 혜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한해 선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그림 II-4] 모범납세자 주차장 무료 이용 스티커



자료: 국세청, 『202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2. 3.

- 또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한국 무역보험공사에서의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혜택, 각 은행에서의 대출금리, 보증심사, 보증지원이 우대되는 금융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콘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국방부·방위청에서의 물품·용역 등 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과 같은 혜택이 부여됨
- 무역보험료 할인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를 20%를 할인하고, 무역보험 가입 한도에 대해 50%를 우대하는 내용이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를 수상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 의료비 혜택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55개 병원에서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지역에 따라 상이함) 모범납세자에게 비급여항목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함
- 은행에서의 금융상 우대 혜택의 경우 금리 인하, 수수료 우대, 신용대출 우대 등의 혜택이 해당되며, 해당 혜택의 내용 및 유효기간은 은행마다 상이함

## 2.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 가.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 현재 「국세청 표창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약 1,100명 정도임
  - 총리 표창 이상에 해당하는 정부포상의 경우 매년 약 50명 정도를 표창하며, 일반 표창의 경우 약 1,000~1,050명의 납세자가 수상함
- 이러한 모범납세자는 폭넓은 포상 대상자 발굴과 포상을 받을 만한 납세자 선발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추천을 받고 있음
  - 모범납세자를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중 ‘모범납세자 추천’ 화면을 통해 추천후보자 공통서류를 첨부하거나, 세무서에 우편발송하여 신청함
  - 경제 관련 협회·단체 등에서 소속 회원 또는 사업자를 모범납세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후보자 공통서류 및 추천자 준비서류를 추천공문에 첨부하고 세무서로 발송하여 신청함
-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과 관련하여 검증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함
  - 각 분야별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을 실시하며, 포상추천 후에도 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을 철회함

- 그 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과 같은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원이 60% 이상 포함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으로 모범납세자를 추천함
  
- 국세청장표창 이상 추천자의 경우 포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단, 공적개요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검증 과정을 거침
  
- 그 후 국세청 공적심의회에서 선발 요건의 최종 검증 및 국세청장 표창을 확정하고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 추천훈격을 결정하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정부포상·장관표창의 수상자가 확정되고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수상이 확정된 납세자들이 수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됨
  - 이때, 국세청장 표창 이상의 경우 국세청 운영지원과가, 지방청 및 세무서장 표창의 경우 각 관서 운영지원과가 모범납세자 선정 업무를 담당함
  
-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후에는 각 훈격별로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7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검증함
  - 이러한 사후관리는 모범납세자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총괄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검증 및 취소의 책임은 세적관리 소관과장이 담당함

〈표 II-3〉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사후관리 소관부서

유형	선정관리 부서	사후관리 부서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 표창권자 - 국세청장표창 이상 :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 지방청 및 세무서장 표창 : 각 관서 운영지원과장	○ 총괄 관리부서 - 모범납세자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검증(취소) 책임부서 - 세적관리 소관과장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 조사모범납세자 - 국세청 조사국장	좌동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 검증(취소) 책임부서 - 국세청 각 소관국실

자료: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 [별표 5]

- 모범납세자 사후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각 세목별 사항에 대하여 성실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엄정히 검증함
- 구체적인 검증 항목은 ① 국세체납, ② 거짓(세금)계산서 경정, ③ 조세범 처벌, ④ 사회적 물의 야기, ⑤ 신용카드 등 의무 위반, ⑥ 수입금액 적출, ⑦ 소득금액 적출, ⑧ 원천징수 불이행, ⑨ 체납처분 면탈자, ⑩ 명의위장 이력자, ⑪ 장려금 부정수급 협조자, ⑫ 세법상 의무 불이행 등 12개 항목임
- 이러한 검증사항과 관련하여 선정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혜택을 배제함

〈표 II-4〉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요건

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체납이 있는 자</li> <li>• 거짓(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와 관련하여 경정처분을 받은 자</li> <li>•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li> <li>•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li> <li>• 수입금액, 가공원가 적출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자</li> <li>• 원천징수불이행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자</li> <li>•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고시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자</li> <li>• 체납처분 면탈자</li> <li>• 명의위장 이력이 있는 자</li> <li>• 장려금 부정수급 협조자</li> <li>•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li> <li>•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를 납부한(부과된) 자</li> </ul>

자료: 국세청, 『202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2. 3.

□ 사후검증은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규정된 대로 연 1회 이상 행하였으나, 2019년부터 연 2회(4월, 10월) 검증으로 검증 횟수가 증가함

### 나.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에 따른 영향

□ 모범납세자 제도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실납세를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선정 이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동안 조세포탈 행위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적지 않다는 상반된 의견도 존재함

○ 서정화 외(2017)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의 선정 전 3년과 선정된 연도를 포함한 3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선정 후가 선정 전에 비해서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낮아졌음을 발견하여, 선정 이후에도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함<sup>1)</sup>

1) 서정화·이호영·유현수,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2017. 8., pp. 77~112

- 배수진(2017)은 조세순응을 전기 대비 소득률의 변동 분으로 측정한 분석 결과에서 성실납세자 선정 직후 전반적으로 신고소득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sup>2)</sup>
- 오기수(2009)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이라는 과세당국의 신의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세무조사 면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함<sup>3)</sup>

### 3. 모범납세자 제도의 쟁점

#### 가. 포상 기능

##### 1) 포상 및 상훈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 상훈제도의 본질은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그 공적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데 있으며, 향후 공적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에 있음<sup>4)</sup>
- 이러한 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과를 통해 명예와 자기발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하여 국가에 대한 권위와 국민에 대한 순응을 확보함<sup>5)</sup>
  - 수여 기관은 수혜자가 수여 기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개인과 구별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자극하여 상훈을 통해 수여 기관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내적 동기를 자극함<sup>6)</sup>

2) 배수진, 「성실납세자 혜택은 조세순응을 유도 하는가: 조건별 보상여부와 혜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2권 제4호, 2017. 8., pp. 1~35

3) 오기수,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9. 3., pp. 9~33

4) 배윤호, 「정부포상의 명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5) 김정훈·황성원, 「정부 상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13.

6) Bruno S. Frey, "Giving and Receiving Award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82, 2006.

- 상훈을 통해 수혜자가 수여 기관과 성립한 관계는 암묵적이고 불안정한 합의를 포함하는 심리적 계약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를 통해 수혜자는 상훈에 속박되고 타인은 수혜자를 정권의 지지자로 여기게 됨

□ 즉, 상훈은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국가가 평가하고 개인의 영예를 높이는 것이며, 사회에 대한 공공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여 단순히 통치행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공공의 이익과 시민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투영된 한 나라의 역사적·문화적·제도적 산물임

□ 상훈제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여되는 포상의 기능에는 국민통합 기능과 조직관리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제고 기능이 있음<sup>7)</sup>

○ 국민통합 기능은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노래, 제복, 포스터, 슬로건 등의 상징을 사용하여 국민에게 동일한 자극을 통해 그 사고나 행동에 동일한 반응을 기대하여 행해지는 심리조작을 말하며, 이러한 조작이 자주 반복해서 사용되면 물리적 강제력에 의하지 않고서도 국민의 이해대립이나 분쟁을 완화시켜 사회를 통합할 수 있음

- 상징조작의 방식으로는 포상식의 장엄한 거행, 각종 기념일(국경일)의 설정,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적인 건조물의 건립, 특정 음악의 장려와 금지, 여러 가지 예술적인 의장의 제작(깃발, 장식물, 제복, 동상, 우표 등), 일화와 역사의 미화, 대중적 시위 등이 있음

○ 생산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포상은 구성원 개개인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직무만족을 통한 자기진작으로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포상을 통해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7) 황성원·권용수·김정훈·김승언, 「정부 서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 훈·포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6권 제1호, 2007, pp. 193~234

- 상훈제도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여되는 포상의 또 다른 기능에는 내적인 동기부여를 강화하여 가치 창출을 높이는 데 있음<sup>8)</sup>
  - 내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며 진심 어린 감사와 대중의 인정이 상금을 대체할 수 있고, 수여자 입장에서도 포상 인플레이션의 위험 없이 정기적으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오히려 금전적인 보상이 추가될 경우 피평가자들에게 전략적 행동 및 사회적 비교를 야기하여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재적 동기를 배제할 수 있음
  
- 상훈 및 포상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훈의 운영에 있어 일정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배운호(2003), 황성원 외(2007)와 황영호 외(2013)의 연구는 '권위의 원칙', '공정의 원칙', '희소의 원칙', '보상의 원칙' 등 네 가지 원칙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여 이러한 원칙에 기반해 상훈의 수·등급·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sup>9)</sup>
  - 권위의 원칙이란 포상에 대해 국가적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 가치는 공식적이고 영속적인 명예성에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수상자에 대한 명예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정통성을 갖는 국가가 주는 포상이어야 하며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이 주는 훈장이어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수여권자가 그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의식을 갖추으로써 포상에 대한 권위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내용과 형식 면에 있어서 권위가 부여될 때 포상의 영예성은 확보됨
  - 공정의 원칙이란 민주사회에서 선악, 정사(正事) 등을 분별하고 평가할 때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에 의하면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의사결정 결과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8) Gallus, Jana and B. Frey, "Awards: A Strategic Management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 2015, p. 1699

9) 황성원·권용수·김정훈·김승언, 「정부 서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 훈·포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6권 제1호, 2007, pp. 193~234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였는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결과의 공정성 및 과정의 공정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객관적 업적평가, 정치성의 배제, 적절한 심사절차의 마련 등이 요구되고, 기구 및 운영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사위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심사위원은 사전공개 또는 사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희소의 원칙이란 ‘드물기에 인정받는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희소성 없는 포상으로 혜택까지 받는다면 상훈질서가 문란해지고 상식적인 사회윤리가 훼손되며, 결국 국가포상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시속(時俗)이 달라져도 영예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엄선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함
- 보상의 원칙이란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발전에 공헌한 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타인으로 하여금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하게끔 칭찬 및 물질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 상훈과 표창은 인간의 허영심과 명예심을 자극하여 피차자들로부터 충성심과 복종을 이끌어내 효율적으로 피차자들의 자발적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고, 경제적 안정과 명예심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지식계층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유효한 수단임
- 현행 우리나라의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기한 상훈의 운영에 관한 원칙들이 현재 우리나라 모범납세자 제도에서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그에 비추어 재고해볼 가치가 있음
- 권위의 원칙의 측면에서는 모범납세자 제도의 역사가 1967년 3월부터 시작되었기는 하지만, 규칙으로서 제도화된 역사와 적극적으로 납세자 및 일반 시민에게 인식된 시간은 길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완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공식적 수여 의식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공정성의 원칙 측면에서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적심의회 및 공개검증을 거침에 따라 공정성의 원칙이 준수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심사위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다는 점은 공정성의 원칙 준수 측면에서 고려해볼 여지가 있음
- 회소의 원칙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회소성이라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준수도를 엄단할 수 없으므로 회소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및 국민적 인식을 고려하여 모범납세자 대상자의 수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 보상의 원칙의 측면에서는 현행 모범납세자 제도상 이러한 원칙이 어느 정도 준수되어 있다고 보이나, 수훈자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 2) 포상과 납세순응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 포상과 납세순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정부와 세무당국이 보상을 실시한 이후의 납세순응 수준을 살펴보는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함
- Satterthwaite(2018)는 미국 내 포상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기간의 온라인 세금 신고 실험을 수행한 결과, 금전적 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함<sup>10)</sup>
- 이예지·심태섭(2019)은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도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및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순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sup>11)</sup>

10) Satterthwaite, Emily A., "Rewarding Honest Taxpayers: An Experimental Assessment," *Florida Tax Review*, 200(1), 2018, pp. 200~242

11) 이예지·심태섭, 「보상의 제공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3호, 2019. 9., pp. 279~316

- Rillstone(2015)은 뉴질랜드 내 납세순응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 포상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상이 처벌보다 납세자에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함<sup>12)</sup>
- Nadja et al.(2012)은 독일 바이에른 주를 대상으로 교회세(Kirchensteuer)에 대한 조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금전적 인센티브 등의 보상이 독일 납세자들의 조세순응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음<sup>13)</sup>

### 3) 포상에 대한 논의점

- 모범납세자 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포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Slippery slope framework)에서는 납세순응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강제적 동기인 제재를 가하거나, 자발적 동기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sup>14)</sup> 처벌보다는 보상이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즉, 포상의 기능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포상이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타 부처 및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효과적인 보상 시스템 설계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역사성, 공정성,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포상 조직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2) Jonathan Rillstone, *Rewarding Taxpayers: A Possible Method to Improve Tax Compliance in New Zealand?*, University of Canterbury, 2015.

13) J-PAL, "Information and Incentives to Encourage Tax Compliance in Germany," <https://www.povertyactionlab.org/evaluation/information-and-incentives-encourage-tax-compliance-germany>, 검색일자: 2022. 5. 13.

14) 이예지·심태섭, 「보상의 제공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3호, 2019. 9., pp. 279~316

## 나.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의 도덕적 해이

-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 체납 및 과소신고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우대 혜택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존재함
- 최근 4년간(2016~202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한 결과, 116명의 모범납세자가 자격을 박탈당함<sup>15)</sup>
  - 2019년부터 사후검증 횟수를 2회로 확대하였고, 사후검증 횟수 증가에 상관없이 연 평균 23명의 자격박탈 인원이 유지되고 있음

〈표 II-5〉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세무조사 실시내역(2015~2020년)<sup>1)</sup>

연도	선정인원(명)	유예기간 중 조사건수(건)	부과세액(억원)
2015	1,207	12	187
2016	1,196	15	361
2017	1,144	13	291
2018	1,187	12 <sup>2)</sup>	96 <sup>2)</sup>
2019	1,089		
2020	1,076		

주: 1) 모범납세자 선정연도를 기준으로 집계·작성됨

(예시) 2011년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2012년도에 조사를 받은 경우 2011년의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으로 집계

2) 조사건수가 10건 미만인 경우 개별 과세정보가 유추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연도별 조사 실적을 합산하여 제출된 자료임

자료: 국세청, 양경숙 의원실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15) 『한국세정신문』, 「국세청, 사회적 지탄받는 모범납세자는 곧바로 사후검증 실시한다」, 2022. 2. 8.,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3566>, 검색일자: 2022. 4. 13.

〈표 II-6〉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현황(2015~2021년)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상)	'19년 (하)	'20년 (상)	'20년 (하)	'21년 (상)	'21년 (하)	
사후검증 대상	3,463	3,021	2,883	2,882	2,830	2,817	2,730	2,722	2,687	2,683	
배제인원	36	23	24	25	13	15	8	8	4	11	
배제 사유	국세체납	17	8	14	15	5	6	6	3	1	2
	조세범처벌	1	2	-	-	1	1	-	-	1	1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4	-	3	4	-	3	-	1	1	-
	사회적 물의	1	3	1	-	-	-	-	-	-	-
	수입(소득)금액 적출	10	8	3	1	5	2	2	3	1	5
	원천징수 불이행	2	-	1	4	-	-	-	1	-	1
	신용카드의무위반	1	1	2	1	2	1	-	-	-	2
	기타(사망 등)	-	1	-	-	-	2	-	-	-	-

주: 2019년부터는 사후검증을 강화하여 연 2회(4월, 10월) 사후검증을 실시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검증 항목을 세분화하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동안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산세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임
  - 검증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모범납세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사후검증 및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엄격하다면, 오히려 성실신고를 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선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 전 사전 검토가 필수적임
  -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개선책이 오히려 모범납세자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성실납세자들이 모범납세자 포상을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다. 모범납세자 혜택의 실질성

-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혜택을 검토하여 실질적 혜택이 없는 보상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우대 혜택에 대한 선별이 필요할 것임
  - 매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우대 혜택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상에 대한 선별이 필요함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우대 혜택 중 실제 적용 사례가 없거나 우대라고 인식되기 미미한 수준의 혜택은 종류만 많아 보일 뿐 의미가 크지 않음
    - 성실신고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형 및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개인 사업자·비사업자·법인 등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별적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우대 혜택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대 혜택이 과도하다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 등이 있으며, 법적 근거 없이 국세청 자체 훈령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상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금전적 보상 외에도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심리적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혜택을 발굴해야 함
  - 박현영·서정화(2019)는 모범납세자 선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낮다는 신호를 자본시장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홍보하여 비조세비용이 감소함으로써 기업가치가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특히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정보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기업가치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sup>16)</sup>

16) 박현영·서정화,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2019. 4., pp. 205~228

- 실제로 모범납세자 선정에 따른 사후검증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를 신청한 납세자들은 금전적 혜택보다는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모범납세자 선정에 대한 사회적 홍보를 확대하는 등 심리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조세 및 경제적 차원의 우대 혜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Ⅲ. 다른 기관 및 주요국의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 1. 우리나라 다른 기관의 모범납세자 제도

##### 가. 관세청

- 관세청은 수출증대, 법규준수도, 관세행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은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중 추천을 포함한 신청자로, 심의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선발하며, 추천 제한 및 우대 대상 기준이 존재함<sup>17)</sup>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이 제한됨
    -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자, 산재율 초과 명단공표 사업장·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등이 이에 해당함
  - 최근 5년 이내 관세 등 체납경력, 「관세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추천이 제한됨
  - 관세청의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sup>18)</sup>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

17) 관세청, 「“2021년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자가추천(신청) 안내(기한연장)」,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9058#viewer>, 검색일자: 2022. 4. 11.

18)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ACVA) 승인업체,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활용한 오류 치유 업체를 뜻함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기업 및 성실 중소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됨

- 또한, 포상 훈격별로 수공기간 요건이 존재하는데, 훈장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의 요건이 있음
  -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 할 최소 기간일 뿐이며 실제 추천 훈격은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관 누리집에 수상자로 소개되고, 상훈법령,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근거로, 훈장·포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을 수 있음

〈표 Ⅲ-1〉 관세청 모범납세자 제도

구분		관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제외 대상	재포상 금지 요건 있음 추천 제한 요건 있음(체납 및 형사 처분 대상 등)	
	우대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 성실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됨	
	인원 기준	심의에 따라 결정됨 (2022년 기준 32명 선발)	
	심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함	
사후검증 절차		확인 불가	
혜택		(심리적 보상) 세관 누리집에 소상자 소개	

자료: 관세청 심사국, 「22년 『제56회 납세자의 날』 유공 포상 계획[공모]」 자료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하여 공로를 치하할 목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운영하고 있음<sup>19)</sup>
-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기업 및 기관 중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아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함
  - 신청자격은 지역 내 사회 공헌활동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고 협력관계에 기반한 비영리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 및 기관이며,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 및 기관도 신청 가능함
  - 선정 기준은 선발 공고일 기준 직전 1년간 사회공헌 추진 실적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은 70점 이상, 그 외 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의 합격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인정제의 혜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등의 금전적 혜택이 주이며, 기술보증기금에서 무료 컨설팅 및 기관 언론 보도 등의 홍보지원 혜택도 주어짐
  -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0.1%p, 기술보증기금은 0.3p% 보증료율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평가 및 기술보증기금 벤처창업교실 대상자 선정 시 우대됨
    - 1년간의 인정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관 언론보도 등의 홍보 지원 및 우수한 인정 기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도 받을 수 있음

19) 사회공헌센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https://crckorea.kr/?menuno=490>, 검색일자: 2022. 4. 21.

〈표 Ⅲ-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구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선정 기준	기간반영	1년간 (기간 요건 미충족의 경우에도, 성과가 인정되면 가능)	
	합격점수	대기업· 공공기관	70점 이상
		그 외 중소기업	60점 이상
	인원 기준	심의에 따라 결정됨 (2021년 기준 총 350개 기업 선정)	
	심의	1. 서류심사: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진행 2. 현장심사: 상동 3. 지역인정심사위원회 심사: 상동 4. 최종인정심사위원회 심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후검증 절차		확인 불가	
혜택	금전전 혜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 할인 등	
	심리적 보상	일반	기관 언론보도 등 홍보지원
		우수 인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자료: 사회공헌센터 자료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다.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를 비롯하여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에 조례를 두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20)</sup>
  - 현행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선정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하며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을 대표적 사례로 비교 검토함

20) 유태현·김태호,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 1) 서울시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은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로,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발함
  - 선발 기준일<sup>21)</sup>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서울특별시세 등에 대해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으면서,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모범납세자를 선발함
    - 서울시장은 모범납세자 선발에 관하여 선발심의 요구서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 요구하고, 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함
    - 위원회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내역 등이 기록된 선발심의 의결서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함
  - 모범납세자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시장에게 모범납세자 자격 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sup>22)</sup>
  - 서울시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 및 건전한 납세 문화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납부실적 기준에 관계없이 많은 인원을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24만 1,078명, 2021년 24만 9,631명, 2022년에는 26만 3,139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음<sup>23)</sup>

2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의 선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함

2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23) 서울특별시, 「서울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 249천여명 선정」,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4543>, 검색일자: 2022. 4. 11.

- 선발된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는 이상 모범납세자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sup>24)</sup>
  - 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납세자 중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가 모범납세자에 해당하게 되어 지자체에서 직접 통보할 수 없음
  
- 시 단위뿐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각각 조례를 두어 구세 기준으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며, 구마다 기간, 건수 및 납부실적 기준이 상이함
  
- 모범납세자 등의 사후검증 절차는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 모범납세자 혜택이 배제되는 지원배제 규정이 존재함
  -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대상 혜택을 받지 못함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하는 경우 또는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탈세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함
  
- 모범납세자 등의 혜택은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의 금전적 혜택이 주이며,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인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등의 조세 혜택도 주어짐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면제·자문 서비스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음
    -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연합뉴스』, 「서울시 올해 모범납세자 26만명…전년보다 1만4천명 늘어」, 2022. 3. 2.,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1047400004>, 검색일자: 2022. 4. 11.

24) 유태현·김태호,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 혜택에 더하여,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3년간 세무조사와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표 III-3〉 서울시 모범납세자 제도

구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기간반영	10년간	
	납부건수	연간 2건 이상 (8년간 계속하여 전액납부)	
	납부금액 기준	없음	
	인원 기준	없음(대상자 전원)	
	심의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사후검증 절차		확인 불가	
혜택	금전전 혜택	일반납세자	서울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면제, 자문서비스 제공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지원됨)
		유공납세자	일반납세자 혜택 +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조세 혜택	일반납세자	-
		유공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지원배제	일반납세자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된 경우와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 등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모든 지원내용 배제	
	유공납세자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서울특별시 조례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2) 부산시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로 구분됨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은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로, 법인과 개인의 납부실적 요건이 상이함
  - 성실납세자는 선발 기준일<sup>25)</sup>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법인은 납부실적이 2천만원 이상이며, 개인은 납부실적이 200만원 이상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함
  - 우수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서 부산광역시장의 선정하는 자를 뜻함
  - 우수납세자가 되려는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법인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우수납세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됨
  
- 시 단위뿐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각각 조례를 두어 구세 기준으로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며, 대부분 본청과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하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본청보다 강화된 납부실적 기준을 적용함<sup>26)</sup>
  
- 성실납세자의 혜택은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의 금전적 혜택이 주이며, 우수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세 혜택도 주어짐
  -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경감

25)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의 선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함

26) 마정화·김미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의 지원이 있으며, 시금고를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예금금리 우대 적용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음

-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 혜택에 더하여,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표 III-4〉 부산시 모범납세자 제도

구분		부산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기간반영	3년간	
	납부건수	연간 3건 이상 (3년간 계속하여 전액납부)	
	납부금액 기준	법인: 2천만원 / 개인: 200만원	
	인원 기준	성실납세자: 없음(대상자 전원)	
	심의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사후검증 절차		확인 불가	
혜택	금전전 혜택	우수납세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경감 지원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성실납세자	일반납세자 혜택 +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부산광역시금고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지원 + 기타 행정적 편의 제공
	조세 혜택	우수납세자	-
		성실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유예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자료: 부산광역시 조례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3) 광주시

-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은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로, 납부금액에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 중 자치구별 지방세 납부자 수 및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광주광역시장이 자치구별로 배정하여 선정함
  - 모범납세자는 추천일<sup>27)</sup>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정함
    - 연간 3건의 기준에 균등분 주민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됨
  -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시장이 선정하는 자를 뜻함
  - 한 번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한 자치구 내에서는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시 단위뿐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각각 조례를 두어 구세 기준으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며, 동구·서구·남구·북구의 경우 해당 연도에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납부기한 내 완납실적의 요건을 충족하면 모범납세자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sup>28)</sup>
- 모범납세자 등의 금전적 혜택으로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가 있으며, 그 외에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심리적 보상이 주어지고 세무조사 면제 등 별도의 조세 혜택이 없는 것이 특징임

27)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범납세자의 선발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함

28) 마정화·김미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명기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됨
-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임이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할 수 있음

〈표 III-5〉 광주시 모범납세자 제도

구분		광주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기간반영	3년간	
	납부건수	연간 3건 이상 (3년간 계속하여 전액납부)	
	납부금액 기준	모범납세자	없음
		유공납세자	법인: 1억원 / 개인: 3천만원
	인원 기준	자치구별 납부자 수 및 납부액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함 (2020년 기준 약 10만명임)	
심의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모범납세자수의 범위 안에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추천하며, 시장은 추천된 모범 및 유공 납세자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함		
사후검증 절차		확인 불가	
혜택	금전전 혜택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심리적 보상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 시 주관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표창장 수여	

자료: 광주광역시 조례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라. 국세청과 우리나라 다른 기관의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 현황 비교

- 국세청과 타 기관의 모범납세자 등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보증재단 보증수수료 면제, 은행대출금리 면제 등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 및 조세혜택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의 경우, 기간에 따른 납부 건수 및 금액 등의 요건이 명확히 존재하며, 관세청, 보건복지부의 경우 추천 및 내부 심사 등의 정성적 요건이 존재함
  - 국세청 및 서울시, 부산시의 경우 세무조사 면제 및 납세담보 면제 등의 조세혜택이 있으나, 타 기관의 경우 조세혜택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 금전적 보상 및 심리적 보상만 제공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제도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무행정상 우대 및 사회적 우대를 모두 제공받고 있으나, 이 중 별도 선정 모범납세자의 경우는 사회적 우대 혜택 없이 세무행정상 우대 혜택만 제공받음
  - 국세청과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범납세자 제도의 우대 혜택 등을 비교해보면 <표 III-6>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음

〈표 III-6〉 국세청과 우리나라 다른 기관의 모범납세자 제도 등 운영 현황 비교

구분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사후검증 절차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7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연2회 12개 항목에 대해 검증					
혜택	<p>금전적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 이용</li> <li>•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li> <li>• 철도 운임 할인</li> <li>•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 한도 우대</li> <li>•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li> <li>• 콘도 요금 할인</li> <li>• 의료비 할인</li> <li>• 금융 우대, 전용신용카드 발급</li> <li>• 국방부, 방위청 물품·용역 등 구매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li> </ul>	-	<p>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인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비 할인 등</p>	<p>일반</p> <p>서울보증재단 보증 심사 시 가점 부여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p>	<p>우수</p> <p>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 경감 지원,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p>	<p>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p>
	<p>심리적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 출입국 우대</li> </ul>	<p>세관 누리집에 소장자 소개</p>	<p>일반</p> <p>기관 언론 보도 등 홍보지원</p>	<p>우수기관</p> <p>보건복지부장관 표창</p>	<p>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p>	<p>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p>

〈표 III-6〉의 계속

구분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혜 택	조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 유예</li> <li>•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시기 선택</li> <li>• 납세담보 제공 면제</li> <li>•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증명에 수 상 이력 표기</li> <li>•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이용</li> </ul>	-	-	일반	-	우수	-	-
					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세무조사 면제</li> <li>•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li> </ul>	성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세무조사 면제</li> <li>•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li> </ul>	
지원배제		세무조사 유예 배제 사유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일반	탈세제보, 탈세혐의 등이 있는 경우 모든 지원 배제됨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확인 불가
		모범 납세자 혜택 배제 일반 사유							

〈표 III-6〉의 계속

구분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불이행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자</li> <li>•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고시위반으로 행정 지도를 받은 자</li> <li>• 체납처분 면탈자</li> <li>• 명의위장 이력이 있는 자</li> <li>• 장려금 부정수급 협조자</li> <li>•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li> <li>•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를 납부한(부과된) 자</li> </ul>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 주요국의 운영 사례

- 해외 주요국의 모범납세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조사하였으나, 일본의 유사 사례를 제외하고 주요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벤치마크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OECD 회원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범납세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확인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며, 여타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일본은 과거의 신고사적이나 조사 결과로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법인에 대해서 우량신고법인으로 표경(表敬)하는 유사 제도가 존재함
  - 선행연구에서 주요국에서는 성실납세는 당연한 국민의 납세의무이므로 별도의 우대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함<sup>29)</sup>
  
- 반대로 모범납세자와 유사한 제도는 대부분 OECD 비회원국에서 운영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아프리카(케냐, 감비아 등) 등에서 납세자의 납세협력에 대한 포상(award) 등의 형식이 적용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선행연구나 본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에서는 주요국이 아닌 경우에 해외 사례조사의 의미가 크게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언어적 한계 등이 존재하여 대략적인 조사를 수행함

29) 마정화·김미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가. OECD 회원국의 운영 사례

### 1) 일본

- 일본에는 과거의 신고사적이나 조사 결과로부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법인에 대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우량신고법인”으로 표경(表敬)하는 제도가 존재함<sup>30)</sup>
  - 즉 납세자 추천으로 선정되는 방식이 중심인 우리나라와는 다르며, 우리나라에서 과거 모범납세자 제도로 변경되기 전의 제도인 성실납세자 제도와 유사함
- 우량신고법인에 대한 표경은 사무운영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대략적인 선정 기준 및 사후관리 기준 일부만이 공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무운영지침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량신고법인은 “탁상 심사”와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선정되는데, “심도 있는 조사”의 선정 대상은 “탁상 심사”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만이 선정되며, 최종적으로 “심도 있는 조사”의 모든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우량신고법인으로 선정됨
  - “탁상 심사”의 경우 ① 심사 대상 법인의 소득금액이 지난 5년간의 국세국 관내 유소득법인의 평균신고소득금액 이상일 것, ② 표경 대상 연도 전 5년간 계속해서 청색신고를 하였을 것, ③ 계속적으로 기한 내 신고하고 완납하였을 것, ④ 7년 이내 조사에 의해 법인의 사업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법인세상 부정 계산이 없으며 각 연도의 신고누설 비율이 10%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함
  - “심도 있는 조사”의 경우 법인세에 대해 조사연도의 신고누락 비율이 과거 5년간 조사한 신고누락 비율의 1/2 이하 및 증차소득금액(과소 또는 과대신고한 소득금액)의 1/2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등 강화된 요건으로 심사함

30) 經濟産業省 貿易經濟協力局 貿易振興課, 「海外開發計画調査等事業(進出拠点整備・海外インフラ市場獲得事業(BEPSを踏まえた納税環境整備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2015.

〈표 Ⅲ- 7〉 우량신고법인 심사사항(2000년 기준)

심사명	심사사항
탁상심사	① 심사 대상 법인의 소득금액이 지난 5년간의 국세국 관내 유소득법인의 평균신고소득금액 이상일 것 ② 표경 대상 연도 전 5년간 계속해서 청색신고를 하였을 것 ③ 계속적으로 기한 내 신고하고 완납하였을 것 ④ 7년 이내 조사에 의해 법인의 사업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법인세상 부정 계산이 없으며 각 연도의 신고누설 비율이 10% 이하일 것
심도 있는 조사	① 법인세에 대해 조사연도에 있어서의 신고누설 비율이 과거 5년간에 조사한 신고누설 비율의 1/2 이하 및 증차 소득금액의 1/2 이하일 것 ② 소비세, 원천소득세에 대해 각 조사과세 기간의 추징세액이 과거 5년간 조사한 1건당의 추징세액의 1/2 이하일 것 ③ 상기 이외의 국세에 대해서도 부정 계산 및 다액의 경정 등이 없을 것 ④ 추징세액이 기한 내 완납되었을 것 ⑤ 모든 거래가 정연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장부 및 증거서류가 적절히 정리·보존되어 사실관계와 회계처리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⑥ 경리책임체제가 확립되어 내부 견제가 기능하고 있는 등 경리조직이 정비되어 있을 것 ⑦ 기업 회계와 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 공사 혼동이 없을 것 ⑧ 불명확한 금융기관 거래가 없을 것 ⑨ 거래처 등 타인의 부정계산에 가담 또는 원조하지 아니할 것 ⑩ 용도 불명금이 없을 것

자료: 經濟産業省 貿易經濟協力局 貿易振興課, 「海外開發計画調査等事業(進出拠点整備・海外インフラ市場獲得業(BEPS)を踏まえた納税環境整備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2015. 저자 번역

- 우량신고법인에 해당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에 방문하여 표경장 수여 및 기념촬영이 시행되며,<sup>31)</sup> 명시적인 기타 혜택은 확인되지 않음
- 우량신고법인에 해당되면 세무조사를 잘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에 들어가도 짧은 일정으로 끝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대외적으로 공표된 정함 또는 공식적인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우량신고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메리트 자체는 대외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그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우량신고법인에 해당되

31) 成本コンテナ株式会社, 「優良申告法人として7回連続の継続表敬」, <https://www.narimotocontainer.com/excellent.html>, 검색일자: 2022. 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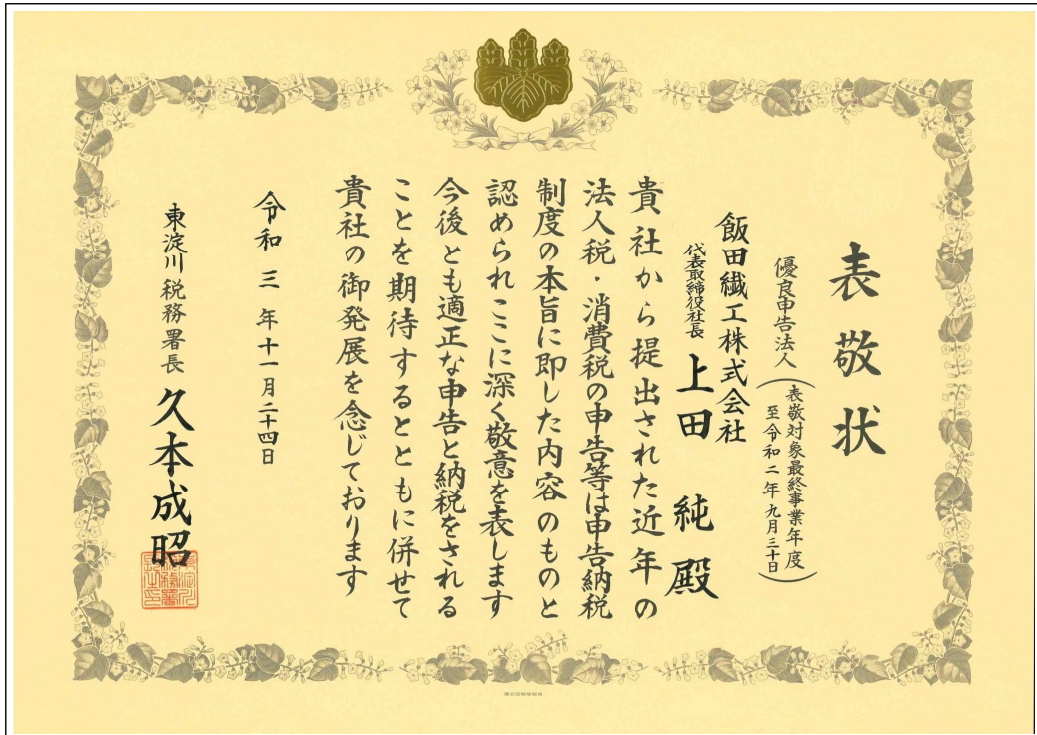
기 때문인지 알 수 없어 우량신고법인 선정에 대한 일본 세정협력자들의 회의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임<sup>32)</sup>

- 하지만 우량신고법인으로 선정되어 표경된 경우 많은 수의 법인들이 회사 홈페이지에 이러한 수상 사실을 알리고 명예롭다고 서술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본에서는 우량신고법인으로 표경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명예로운 일로 여기는 것으로 보임

---

32) Yahoo! JAPAN, 「優良申告法人について」, <https://finance.yahoo.co.jp/money/experts/questions/q1475895489>, 검색일자: 2022. 5. 17.

[그림 Ⅲ-1] 실제 수여된 표경장



〈표경장〉

우량신고법인(표경 대상 최종사업연도: 2020년 9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님

귀사에서 제출된 최근 연도의 법인세, 소비세의 신고 등은 신고납세 제도의 본지에 합당한 내용인 것으로 인정되어 이러한 점에 깊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신고와 납세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히가시요도가와 세무서장 ○○○

자료: 飯田織工株式会社, 「【ご報告】弊社が優良申告法人として認定されました」, [https://iidasenko.co.jp/publics/index/1/detail=1/b\\_id=1/r\\_id=27/](https://iidasenko.co.jp/publics/index/1/detail=1/b_id=1/r_id=27/), 검색일자: 2022. 5. 18. 저자 번역

[그림 Ⅲ-2] 표경장 수여식



자료: 山本産業株式会社, 「和歌山税務署より「優良申告法人」として表敬状を授与されました。», <http://www.yamamotosangyo.jp/activity/%E5%84%AA%E8%89%AF%E7%94%B3%E5%91%8A%E6%B3%95%E4%BA%BA>, 검색일자: 2022. 5. 18.

- 우량신고법인으로 표경된 경우에는 사후검증의 목적으로 선정된 5년 후 행정지도인 개별지도가 행해지며, 개별지도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계속해서 표경이 행해지고, 4년 경과 후 조사로 다시 표경의 판단이 이루어짐<sup>33)</sup>
- 과거에는 표경 후 5년마다 재표경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으나, 2015년 이러한 지침이 개정되어 대상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표경 5년 후에는 개별지도만으로 사후검증을 갈음함

33) 税務研究会, 「優良申告法人制度を見直し 原則5年後に「指導」で表敬」, <https://www.zeiken.co.jp/news/3204673.php>, 검색일자: 2022. 5. 17.

- 우량신고법인으로 표경되고 5년 후 개별지도를 행하며, 개별지도를 행한 후 4년 후에 조사를 시행하여 다시 표경의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수년간 우량신고법인으로 지정되어 다년간 유지될 수도 있음
  - 실제로 7회, 10회 연속으로 우량신고법인으로 표경된 법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sup>34)</sup>
  
- 우량신고법인은 도쿄 국세국에서만 한 해 260여 법인 정도<sup>35)</sup> 선정되는 등 전체 일본 법인의 1% 미만의 법인만이 선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범납세자 제도에 비취보았을 때 적지 않은 수라고 인지할 수 있으나 한 번 표경된 법인이 지속적으로 표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많은 수의 법인이 우량신고법인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개인의 경우 세무표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나, 우리나라의 모범납세자 제도와 동일한 제도는 아니며 납세조합의 장 등 세무협력단체의 임원 등이 조세행정에 큰 협력이 있는 경우 수여함<sup>36)</sup>

## 2) 라트비아

- 라트비아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세목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이 있는 납세자 중, 라트비아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자를 국제 및 최대 납세자(International and large taxpayers)로 선정하여,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한 세금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sup>37)</sup>

34) 成本コンテナー株式会社, 「優良申告法人として7回連続の継続表彰」, <https://www.narimotocontainer.com/excellent.html>, 검색일자: 2022. 5. 17.

35) 税務研究会, 「優良申告法人 東京国税局での表彰基準は年間260法人程度」, <https://www.zeiken.co.jp/news/32610994.php>, 검색일자: 2022. 5. 17.

36) 国税庁, 「平成30年度納税表彰式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okinawa/release/h30/nozei\\_hyoushou/index.htm](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okinawa/release/h30/nozei_hyoushou/index.htm), 검색일자: 2022. 5. 18.

37) 라트비아 국세청, “Servicing of international and large taxpayers,” <https://www.vid.gov.lv/en/servicing-international-and-large-taxpayers>, 검색일자: 2022. 5. 13.

- 납부세액은 연간 순매출액 또는 연간 부가가치세 거래총액, 연방 수준 및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야 함
  - 연간 순매출액 또는 연간 부가가치세 거래총액은 400만유로를 초과하여야 하고, 정부 총예산에 납부되는 세액은 70만유로를 초과하여야 하며, 주정부 예산으로 납부되는 세액은 500만유로를 초과하여야 함
- 이외에도 납세자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고, 평가 기준일 30일 이내에 체납세액이 없어야 하는 등의 기타 기준이 존재함

## 나. OECD 회원국 이외

### 1)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조세기본법(UU 28) 제17C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모범납세자(Wajib Pajak Teladan, WP Patuh)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sup>38)</sup>
- 모범납세자의 선정 기준은 3년간 연속하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을 받은 납세자로, 기한 내 신고·납부 등의 조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자 중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sup>39)</sup>
- 국세청에서 열거하는 요건은 총 네 가지로, ① 기한 내 신고서 제출, ② 납기 연장이나 분납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체납 사실이 없을 것, ③ 회계사 또는 금융감독청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3년간 연속하여 적정의견 유지, ④ 최근 5년간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분야 범칙 사실이 없을 것임

38) 주인도네시아대한국대사관, 「세금 조기환급 제도(모범납세자 우대)」,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9819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9819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22. 5. 2.

39) 주인도네시아대한국대사관, 「세금 조기환급 제도(모범납세자 우대)」,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9819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9819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22. 5. 2.; 인도네시아 국세청, “Wajib Pajak Kriteria Tertentu,” <https://www.pajak.go.id/id/wajib-pajak-kriteria-tertentu>, 검색일자: 2022. 5. 2.

- 소속관서 추천내용, 세수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 재량으로 선정하지만, 납세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납세자는 늦어도 1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일 이전연도 1월부터 11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 세금신고서 및 직전 3개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서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함<sup>40)</sup>
  
- 모범납세자 등의 혜택은 연도 중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무조사 없이 서면 분석만으로 부가가치세는 1개월 이내, 소득세는 3개월 이내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함
  
- 모범납세자 등의 사후검증 절차는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배제 규정이 존재함
  - 연례 정기 세금신고서 지연 제출, 연속되는 과세기간 정기 세금신고서 지연제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조사 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모범납세자 결정을 취소함
  - 또한 조기환급을 실시한 이후 세무조사 시행이 가능한데, 세무조사 적발 시 과다환급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

40)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세금 조기환급 제도(모범납세자 우대)」,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9819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9819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자: 2022. 5. 2.; 인도네시아 국세청, “Wajib Pajak Kriteria Tertentu,” <https://www.pajak.go.id/id/wajib-pajak-kriteria-tertentu>, 검색일자: 2022. 5. 2.

〈표 III-8〉 인도네시아 모범납세자 제도

구분		인도네시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기간반영	3년간
	납부건수 및 금액 기준	없음
	주요건	회계사 또는 금융감독청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3년간 연속하여 적정의견 유지
	심의	국세청은 요건을 구비한 납세자 중에서 소속관서 추천내용, 세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함
사후검증 및 지원배제, 페널티		정기신고서 등 지연제출 사유 발생 시 선발 취소, 조기 환급 실시 이후 세무조사 시 미납세액이 있을 경우 가산세 100% 부가 및 월 2% 미납가산세 부과
혜택	금전전 혜택	-
	조세 혜택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 가능 이 경우 서면분석만으로도 환급금 지급 가능

자료: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및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자료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 2) 이외

- (인도) 인도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 감사장과 함께 감사의 이메일을 송부함<sup>41)</sup>
-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별도 심사는 없으며, 납세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감사장을 송부함
    - 감사장에는 소득세의 금액에 따라 플래티넘~브론즈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음이 표기되어 있으며, 납세의무의 이행에 대한 감사가 서술되어 있음
    - 이러한 감사장을 송부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이 납세제에게 보다 “고객 친화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인도 과세관청에 따르면 12억 5천만 인도 인구 중 1%만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고양시키기 위함으로 보임

41) Bemoneyaware, “Income Tax Certificate of Appreciation,” <https://www.bemoneyaware.com/blog/income-tax-certificate-of-appreciation/>, 검색일자: 2022. 5. 18.

-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감사장을 수령한 자들에게는 감사장 외의 다른 보상은 없음
- 2018년경 우리나라의 모범납세자 제도와 같이 정직한 납세자들에게 공항, 기차역 및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우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sup>42)</sup> 후속 내용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검토에 그친 것으로 보임
-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은 납세협력 의무 이행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에 따라 선정됨<sup>43)</sup>
  - 점수 구간에 따라 납세자를 3단계(Gold, Silver, Bronze)로 구분하여 관리함
    - 최대 점수는 20점이며, 16점 이상은 Gold, 11~15점은 Silver, 1~10점은 Bronze로 분류됨
  - 모범납세자 등의 우대 혜택으로는 Silver 등급부터 세무감사 면제, Gold 등급은 감사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조세 혜택이 주어지며, 선정인 전원에게 2년간 유효한 세금 준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심리적 보상도 주어짐
- (케냐) 케냐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통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준수 납세자(Compliant taxpayers) 중 고액납세자(Top taxpayer)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날(매년 10월 말)에 정부 포상 등을 수여하며, 대중이 참여하는 축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sup>44)</sup>
  - 지연 신고 및 무신고 등의 사유가 없으며, 체납 및 미납세액 없이 납부의무를 다한 납세자 중 납부세액이 많은 자가 대상임

42) THE TIMES OF INDIA, "Examining report that proposes to reward honest taxpayers: CBDT chairman,"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examining-report-that-proposes-to-reward-honest-taxpayers-cbdt-chairman/articleshow/66623906.cms>, 검색일자: 2022. 5. 18.

43) 홍범교·서주영,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p. 46

44) KRA "KRA set to appreciate, honour compliant taxpayers," <https://www.kra.go.ke/news-center/press-release/kra-set-to-appreciate%2C-honour-compliant-taxpayers>, 검색일자: 2022. 5. 16.

- 준수 납세자에게는 세금 완납에 대한 증거로 국세청에서 발행한 공식문서인 납세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가 발급되며, 12개월 동안 유효함<sup>45)</sup>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정부 세수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최우수 납세자(Best taxpayer)상을 수여함<sup>46)</sup>
-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세무당국은 연간 납세의무 준수 여부 및 납부세액 기준으로 선정한 약 40~50명의 준수 납세자(Compliant taxpayers)에게 포상을 수여함<sup>47)</sup>
  - 산업별 및 매출액 규모별로 선정하며, 표창과 더불어 국세청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발급됨
    - 납세자를 크게 8단계(Most Compliant Taxpayers, Highest Tax Contributors, Large Tax, Medium Tax, Small Tax, Petty Trader, Real Property, highest taxpayers per counties among others)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준수 납세자를 선정함<sup>48)</sup>
    - Large Tax는 연간 총소득이 3천만라이베리아달러 이상인 사업장을 뜻하며, 연간 총소득이 300만~3천만라이베리아달러는 Medium Tax, 20만~300만라이베리아달러는 Small Tax로 분류됨
- (감비아) 감비아는 납세규범을 준수한 납세자들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개인 및 조직에 감비아 국세청 납세자 시상식을 통해 포상함<sup>49)</sup>

45) KRA, "What is Tax Compliance?," <https://kra.go.ke/business/business-compliance-penalties/business-how-to-file/tax-compliance>, 검색일자: 2022. 5. 16.

46) AEON, "AEON Malaysia awarded Best Taxpayer Award 2020," [https://www.aeonretail.com.my/corporate/news/press2021/press\\_id210402.php](https://www.aeonretail.com.my/corporate/news/press2021/press_id210402.php), 검색일자: 2022. 5. 16.

47) LRA, "LRA Gives Awards To Liberia's Highest, Compliant Taxpayers," <https://revenue.lra.gov.lr/2809/>, 검색일자: 2022. 5. 16.

48) Linked in, "LRA To Appreciate And Award Outstanding Taxpayers," 2020. 12. 2., <https://www.linkedin.com/pulse/lra-appreciate-award-outstanding-taxpayers-liberia-revenue-authority>, 검색일자: 2022. 5. 16.

49) The Standard, "GRA awards most compliant taxpayers," <https://standard.gm/special-report/90689/>, 검색일자: 2022. 5. 18.

- 납세자 시상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여 대형 납세자, 중간납세자, 소액납세자, 수입업자, 건설회사, 공기업 등 다양한 납세자에게 포상하며, 해당 포상과 관련된 상패 및 인증서 외의 보상은 확인되지 않음<sup>50)</sup>
  
-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 및 개인 납세자에게 방글라데시 국세청이 우수한 납세자로서 상을 수여함<sup>51)</sup>
  - 해마다 약 150명의 납세자들이 선정되고 개인, 기업, 기타 부문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시상하며, 해당 범주 내에서도 은행업, 식음료, 기자, 여성 등 수상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노력함
  - 수상한 경우 시상식 행사를 통해 상장 및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 카드를 수여함<sup>52)</sup>
    - 세금 카드의 소지자의 본인 및 가족은 공립 병원에서 객실을 이용할 수 있고 공항의 CIP(Commercially Important Person)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대중교통과 관련한 특권을 향유할 수 있음
    - 해당 세금 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방글라데시 국세청에 반납해야 함

---

50) THE POINT, "Barrow presides over GRA 4th Taxpayers Award," <https://thepoint.gm/africa/gambia/headlines/barrow-presides-over-gra-4th-taxpayers-award>, 검색일자: 2022. 5. 18.

51) The Financial Express, "Top Bangladeshi taxpayers listed, NBR to honour 252 corporates, individuals," <https://thefinancialexpress.com.bd/trade/top-bangladeshi-taxpayers-listed-nbr-to-honour-252-corporates-individuals-1637204358>, 검색일자: 2022. 5. 18.

52) Prothom Alo, "NBR selects 50 for coveted 'Tax Card'," <https://en.prothomalo.com/business/NBR-selects-50-for-coveted-Tax-Card>, 검색일자: 2022. 5. 18.

## IV. 개선 방안

### 1. 개선 방안

#### 가. 명칭 변경

- '모범납세자'라는 명칭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들의 권리보다는 징수 측면이 더 부각된 명칭으로, 자발적 납세가 아닌 납세의무를 강요하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모범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므로 모범납세자의 명칭을 풀어서 해석하면 '조세를 납부하는 자 중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으로 해석됨
  - 이러한 명칭에는 국세청 입장에서 납부행위를 장려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의미까지는 포괄할 수 없음
  
- 납세자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납세풍토의 기반 구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실납세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명칭의 변경이 필요함
  - 현재 국내 조세담론은 납세순응도, 증세 및 감세 등 징수 및 그에 따른 협력비용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납세자 입장에서의 논의는 많지 않은데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시점임
  
- 국내 다른 기관 및 해외 모범납세자 유사 제도의 명칭을 살펴본바, 국세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관적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납세자의 자긍심에 초점을 둔 기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국세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
- 일본, 라트비아, 케냐, 말레이시아, 라이베리아, 감비아, 방글라데시는 고액납세자, 준수납세자 등 국내 제도와 유사한 직관적인 명칭을 사용함
-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지역사회공헌, 금융발전유공 등 수상자의 자긍심에 초점을 둔 기타 명칭을 사용함

〈표 IV-1〉 국내 다른 기관 및 해외 모범납세자 명칭 비교

구분	기관	명칭	비고	국내 명칭과 동일성 여부
국내	관세청	모범납세자	-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인정제	-	×
	지방자치단체	모범납세자	-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유공자	-	×
해외	일본	우량신고법인	-	×
	라트비아	최대 납세자 (Large taxpayers)	-	×
	인도네시아	모범납세자 (Wajib Pajak Teladan)	-	○
	인도	별도 명칭은 없고 감사장 송부	금액에 따라 플래티넘~브론즈 등으로 카테고리화됨	×
	캄보디아	모범납세자	점수 구간에 따라 납세자를 3단계 (Gold, Silver, Bronze)로 구분하여 관리함	○
	케냐	준수 납세자 (Compliant taxpayers), 고액납세자 (Top taxpayer)	-	×
	말레이시아	최우수 납세자 (Best taxpayer)	-	×
	라이베리아	준수 납세자 (Compliant taxpayers)	납세자를 크게 8단계(Most Compliant Taxpayers, Highest Tax Contributors, Large Tax, Medium Tax, Small	×

〈표 IV-1〉의 계속

구분	기관	명칭	비고	국내 명칭과 동일성 여부
			Tax, Petty Trader, Real Property, highest taxpayers per counties among others)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준수 납세자를 선정함	
	감비아	준수납세자	세부적으로 대형 납세자, 중간납세자, 소액납세자 등의 구분이 있음	×
	방글라데시	고액납세자 (Top taxpayers)	-	×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도의 취지와 타 기관 등의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을 고려하여 ‘세정협조자’, ‘납세문화기여자’ 등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명칭으로의 변경을 제안함
  -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에는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가,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이라는 원칙이 열거되어 있음
  - 이러한 선발 원칙을 참고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명칭의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명칭 선정은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는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통해 최적의 명칭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나. 제도 홍보 강화

- 사후검증 대상 중 배제인원 비율은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박탈 현황 및 사후검증에 따른 적발 사례 등 제도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보도자료가 많아 긍정적 측면도 함께 기술된 균형 있는 보도자료의 배포가 필요함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세행위 등으로 자격이 박탈된 현황뿐 아니라, 일반 사업자의 소득탈루 현황도 함께 기술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일반 납세자들에게 모범납세자 제도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재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은 최근 5년간 30% 이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이 소득을 탈루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소득탈루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7%, 2016년 27.0%, 2017년 37.0%, 2018년 40.3%, 2019년 35.4%로 매해 개인사업자들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30%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sup>53)</sup>
  - 특히 납세액이 많은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 적출 비율이 40% 이상임

〈표 IV-2〉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소득탈루 현황(2015~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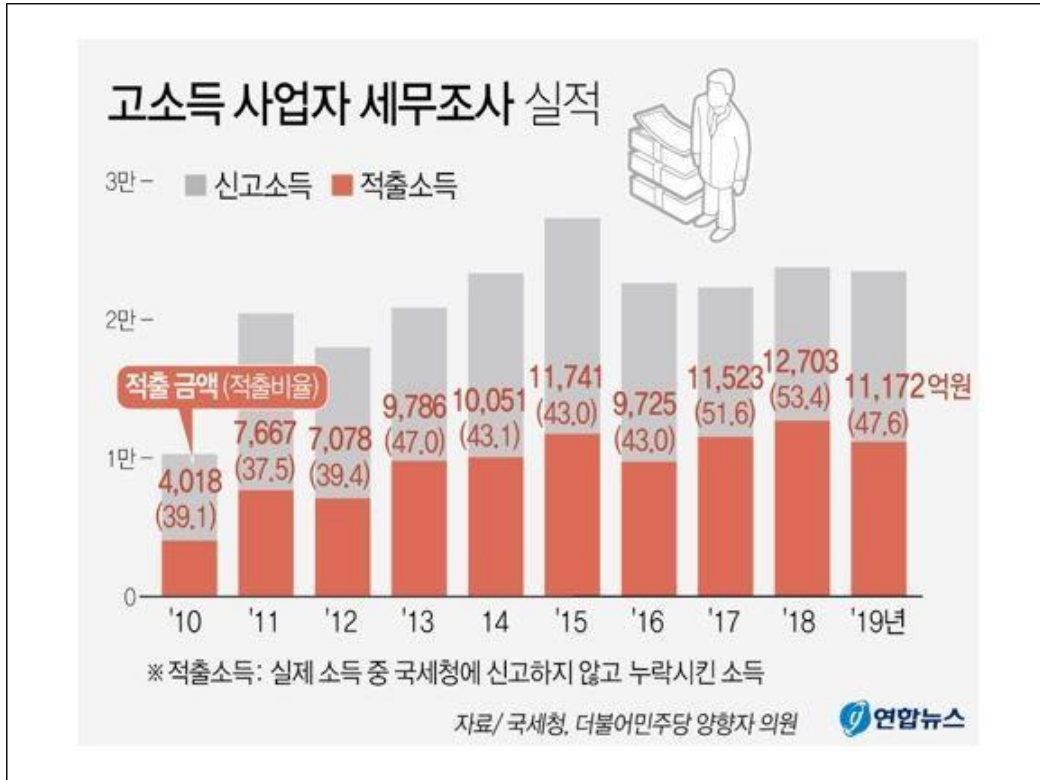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조사건수	결정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A)	결정소득금액 (B)	적출소득금액 (B-A)	소득탈루율 (1-A/B)
합계	23,440	941,274	92,745	141,856	49,112	34.6
1억원 이하	1,524	1,414	420	1,203	785	65.1
5억원 이하	4,663	25,767	3,372	7,975	4,604	57.7
10억원 이하	4,512	60,549	8,371	15,167	6,794	44.8
50억원 이하	9,981	331,544	36,615	58,119	21,504	37.0
50억원 초과	2,760	521,999	43,967	59,392	15,425	26.0

자료: 국세청, 장혜영 의원실 제출자료를 재구성하여 저자 작성

53) 『연합뉴스』, 「장혜영 “최근 5년간 저소득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58.7%”」, 2020. 10. 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42500002>, 검색일자: 2022. 5. 18.

[그림 IV-1]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 국세청;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제공자료

- 모범납세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교 통계자료가 보도자료에 함께 기술된다면,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회복 및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조세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제도의 기사를 균형적으로 선별하여 받아들이기 쉽지 않음
- 따라서, 국세 통계자료에서 미공개된 소득탈루 현황 및 적출 비율도 일정 부분 공개하여, 납세자들이 직접 객관적 수치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자에 대한 공개 채널을 다각화하여 세정상 및 사회적 우대 혜택 외에도 모범납세자 선정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함
  -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모범납세자 수상자 명단을 게재하고 있는데, 공개방식을 일반 대중들이 접하기 쉬운 SNS 채널 등에도 게시하는 등 공개 채널을 다각화하여야 함
    - 현재 모범납세자 명단이 게재되는 국세청 운영 홍보채널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연스럽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등을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채널을 직접 구독하여야 모범납세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임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경우, 선정된 일반 업체에 대해 기관 언론 보도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 혜택 개선

- 대출금리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의 경우 혜택 수준이 미미하며, 세정상 우대 혜택은 도덕적 해이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우대 혜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타 부처와 제도의 운영 현황 및 운영성과 등의 결과를 공유하여, 선발 기관 및 관리 기관의 입장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하나의 개선 방안으로 국세상담센터(126)에 모범납세자를 위한 직통전화 라인을 개설하거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이용 시 우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대부분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국세상담센터 등의 전화문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어, 직통전화 라인을 개설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관련 정보 획득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 시,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등 전화문의”를 선택한 납세자가 가장 많았음<sup>54)</sup>
- 또한, 같은 선행연구에서 응답자들에게 홈택스 기능의 불편함 정도를 질문한 결과 “국세상담센터(126) 전화”가 평균 2.45로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sup>55)</sup>
-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국세상담센터(126)의 원활한 서비스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V-3〉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관련 정보 획득 방법의 응답항목별 분포

(단위: 명, %)

2-5. 귀하는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관련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국세청홈페이지	407 43.1	537 56.6
2)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	361 38.2	583 61.8
3)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이용	389 41.2	555 58.8
4)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등 전화문의	587 62.2	357 37.8
5) 지인	515 54.6	429 45.4
6) 세무사 등의 전문가	197 20.9	747 79.1
7) 종합소득세법 책 등의 전문서적	80	864

주: 정훈 외,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54) 정훈·김기형·이미현·김치울·박진수,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p. 128

55) 정훈·김기형·이미현·김치울·박진수,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p. 128

〈표 IV-4〉 홈택스 기능의 불편함 정도

2-7. 귀하는 다음의 홈택스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평균값
1) 챗봇 등 신고도움서비스	2.53
2) 국세상담센터(126)전화	2.45
3) 세무서 방문상담예약	2.89
4) 홈택스 상담 사례 검색	2.53
5) 홈택스 인터넷 상담하기	2.56
최댓값, 최솟값	2.89, 2.45

자료: 정훈 외,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고정적인 세무대리인이 있는 모범납세자들도 소득세 신고 이외의 세목에 대해서는 직접 국세청에 질의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 직통라인 개설 등을 통해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함
  - 세무대리인이 정기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인지세 또는 부과지세목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이 세목에 대해서는 직접 국세청에 질의 응답하는 경우가 많음
- 홈택스에 제공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이용 시 우대하는 방안을 통하여, 판례 및 예규 제시 등을 통해 모범납세자 선정자들이 기업활동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무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혜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상에 대한 선별이 필요함
  - 저자가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으로 국세상담센터 직통전화 라인 개설을 제안한 것은 과거 납세자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임
  - 이처럼,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현실적 고충에 대해 들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활용하여 세무행정 운영 방향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임

- 매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우대 혜택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고, 개인 사업자·비사업자·법인 등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차별적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2. 제안의 구분

- 상기 제안을 실행기간을 기준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장·단기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구분을 제시함
  - 대규모 예산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장기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예산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행정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는 단기로 구분함
  - 대규모 예산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행정적 변화에 인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중기로 분류함

〈표 IV-5〉 개선 방안의 구분

방안		기간
홍보 강화	제도 홍보 강화: 균형 있는 보도자료의 배포, 홍보 채널 다각화	단기
제도 개선	명칭 변경	장기
	우대 혜택 개선	중기
기타	사업자 등록 시 차별적인 납세신고 안내로 인식 개선	중기
	차별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	중기

자료: 저자 작성

## V. 결론

- 모범납세자 제도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1967년 3월부터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약 1천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선발되었음
  - 다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회원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 우량신고법인으로 표경하는 제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의 우량신고법인에 대한 표경은 국내에서 모범납세자 제도로 변경되기 전의 제도인 성실납세자 제도와 유사함
  
- 국내 타 기관에서도 모범납세자 제도 및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어 훈령에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제도와는 차이가 존재함
  - 서울시를 비롯하여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에 조례를 두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반해, 현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제도는 「국세기본법」 등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고 국세청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한계가 존재함

-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대 혜택이 과도하다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이 있어, 우대 혜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인원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세정상 우대 혜택을 지양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적정 혜택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모범납세자 제도의 우대 혜택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 입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타 부처의 원활한 협조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우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우대 혜택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여 각자가 원하는 차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모범납세자 제도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포상의 희소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문헌자료>

- 국세청, 『2022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안내』, 2022. 3.
- 김정훈·황성원, 「정부 상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2호, 2013.
- 마정화·김미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 박현영·서정화,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2019. 4., pp. 205~228.
- 배수진, 「성실납세자 혜택은 조세순응을 유도 하는가: 조건별 보상여부와 혜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2권 제4호, 2017. 8., pp. 1~35.
- 배윤희, 「정부포상의 영세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서정화·이호영·유현수,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2017. 8., pp. 77~112.
- 오기수,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9. 3., pp. 9~33.
- 유태현·김태호,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 운영 개선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
- 이예지·심태섭, 「보상의 제공이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1권 제3호, 2019. 9., pp. 279~316.
- 정훈·김기형·이미현·김치울·박진수, 『비대면시대 국세 신고체계의 발전적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하미승·전영상, 「정부포상의 합리적 심사기준 개발 방안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6권 제2호, 2007, pp. 217~245.

홍범교·서주영, 『성실 납세자 우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황성원·권용수·김정훈·김승언, 「정부 서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 훈·포장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6권 제1호, 2007, pp. 193~234.

Frey, Bruno S., "Giving and Receiving Award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82, 2006.

Gallus, Jana and B. Frey, "Awards: A Strategic Management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7, 2015, pp. 1699~1714.

Rillstone, Jonathan, *Rewarding Taxpayers: A Possible Method to Improve Tax Compliance in New Zealand?*, University of Canterbury, 2015.

Satterthwaite, Emily A., "Rewarding Honest Taxpayers: An Experimental Assessment," *Florida Tax Review*, 200(1), 2018, pp. 200~242.

經濟産業省 貿易經濟協力局 貿易振興課, 「海外開発計画調査等事業(進出拠点整備 海外インフラ市場獲得事業 (B E P Sを踏まえた納税環境整備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2015.

## 〈법령 및 규정〉

### 한국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 시행규칙」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인도네시아

조세기본법(UU 28)

### 〈온라인 자료〉

감비아 국세청, <https://revenue.lra.gov.lr/>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라트비아 국세청, <https://www.vid.gov.lv/>

사회공헌센터, <https://crckorea.kr/>

인도네시아 국세청, <https://www.pajak.go.id/>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

케냐 국세청, <https://www.kra.go.ke/>

서울특별시, 「서울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부 모범납세자 249천여명 선정」,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24543>, 검색일자: 2022. 4. 11.

『연합뉴스』, 「서울시 올해 모범납세자 26만명…전년보다 1만4천명 늘어」, 2022. 3. 2., <http://www.yna.co.kr/view/AKR20220301047400004>, 검색일자: 2022. 4. 11.

\_\_\_\_\_, 「장혜영 “최근 5년간 저소득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58.7%”」, 2020. 10. 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42500002>, 검색일자: 2022. 5. 18.

飯田織工株式会社, 「【ご報告】弊社が優良申告法人として認定されました」, [https://iidasenko.co.jp/publics/index/1/detail=1/b\\_id=1/r\\_id=27/](https://iidasenko.co.jp/publics/index/1/detail=1/b_id=1/r_id=27/), 검색일자 2022. 5. 18.

国税庁, 「平成30年度納税表彰式の実施について」, [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okinawa/release/h30/nozei\\_hyoushou/index.htm](https://www.nta.go.jp/about/organization/okinawa/release/h30/nozei_hyoushou/index.htm), 검색일자: 2022. 5. 18.

成本コンテナ株式会社, 「優良申告法人として7回連続の継続表敬」, <https://www.narimotocontainer.com/excellent.html>, 검색일자: 2022. 5. 17.

税務研究会, 「優良申告法人制度を見直し 原則5年後に「指導」で表敬」, <https://www.zeiken.co.jp/news/3204673.php>, 검색일자: 2022. 5. 17.

税務研究会, 「優良申告法人 東京国税局での表敬基準は年間260法人程度」, <https://www.zeiken.co.jp/news/32610994.php>, 검색일자: 2022. 5. 17.

山本産業株式会社, 「和歌山税務署より「優良申告法人」として表敬状を授与されました。」, <http://www.yamamotosangyo.jp/activity/%E5%84%AA%E8%89%AF%E7%94%B3%E5%91%8A%E6%B3%95%E4%BA%BA>, 검색일자: 2022. 5. 18.

AEON, “AEON Malaysia awarded Best Taxpayer Award 2020,” [https://www.aeonretail.com.my/corporate/news/press2021/press\\_id210402.php](https://www.aeonretail.com.my/corporate/news/press2021/press_id210402.php), 검색일자: 2022. 5. 16.

Bemoneyaware, “Income Tax Certificate of Appreciation,” <https://www.bemoneyaware.com/blog/income-tax-certificate-of-appreciation/>, 검색일자: 2022. 5. 18.

J-PAL, “Information and Incentives to Encourage Tax Compliance in Germany,” <https://www.povertyactionlab.org/evaluation/information-and-incentives-encourage-tax-compliance-germany>, 검색일자: 2022. 5. 13.

Linked in, “LRA To Appreciate And Award Outstanding Taxpayers,” 2020. 12. 2., <https://www.linkedin.com/pulse/lra-appreciate-award-outstanding-taxpayers-liberia-revenue-authority>, 검색일자: 2022. 5. 16.

Prothom Alo, “NBR selects 50 for coveted ‘Tax Card’,” <https://en.prothomalo.com/business/NBR-selects-50-for-coveted-Tax-Card>, 검색일자: 2022. 5. 18.

The Financial Express, “Top Bangladeshi taxpayers listed, NBR to honour 252 corporates, individuals,” <https://thefinancialexpress.com.bd/trade/top-bangladeshi-taxpayers-listed-nbr-to-honour-252-corporates-individuals-1637204358>, 검색일자: 2022. 5. 18.

THE POINT, “Barrow presides over GRA 4th Taxpayers Award,” <https://thepoint.gm/africa/gambia/headlines/barrow-presides-over-gra-4th-taxpayers-award>, 검색일자: 2022. 5. 18.

The Standard, “GRA awards most compliant taxpayers,” <https://standard.gm/special-report/90689/>, 검색일자: 2022. 5. 18.

THE TIMES OF INDIA, “Examining report that proposes to reward honest taxpayers: CBDT chairman,”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examining-report-that-proposes-to-reward-honest-taxpayers-cbdt-chairman/articleshow/66623906.cms>, 검색일자: 2022. 5. 18.

Yahoo! JAPAN, 「優良申告法人について」, <https://finance.yahoo.co.jp/money/experts/questions/q1475895489>, 검색일자: 2022. 5. 17.



세정연구 22-05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 사후관리 및 우대 혜택을 중심으로**

---

발 행 2022년 6월 30일  
저 자 정훈·이미현·권순오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044-866-6331  
I S B N 979-11-6655-144-4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